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전문가넷	<h1>보도자료</h1>	
	2026년 4월 21일(화)	성지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박환솔 노동건강연대 010-2610-397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은 ‘HJ 중공업’

-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SPC’, ‘쿠팡’ 선정

- 삼표 무죄판결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악의 판결>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여 산업 재해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산업재해가 개인의 부주의나 불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책임 방기,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매해 진행되고 있다.
-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은 HJ 중공업이다. HJ 중공업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5년 11월 6일 울산시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매몰됐고, 전원 사망했다. 사고 직후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하청업체인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HJ 중공업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고 외에도 부산시 중구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도 산재사고를 일으켰고, 2026년에도 경기도 수원의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는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 한 해 동안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고 11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
-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죽고 27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설계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던 소방 시설이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6. HJ 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삼성기업이 일으킨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다. 하청 구조를 이용한 이윤 창출이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증명됐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한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며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7.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SPC와 쿠광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총투표 8,856 명 중 SPC가 4,200 표(47.4%), 쿠광이 3,763 표(42.5%)를 얻었다. 투표 초기, 최근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쿠광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지난 4월 10일 SPC 삼립 시흥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에 대한 투표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5년 같은 시흥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수차례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켜 온 SPC가 여전히 아무런 개선 없이 산재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이 드러나 사회적 분노가 촉발됐다.
8. 투표는 막바지까지 박빙이었고, 전체 투표 참여의 절반가량이 두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때문에 기획단은 적은 표 차이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두 살인기업 모두를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해 두 기업 모두를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9. <최악의 판결상>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2023고단834)이다. 2022년 1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다. 따라서 향후 법의 적용과 실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훼손했다. 어렵게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판결에서부터 법취지를 훼손하며 최악의 선례를 남긴 이 판결을 2026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내용	발언
인사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6 최악의 살인기업> HJ 중공업 규탄 발언	이경근 (플랜트건설노조 노안위원장)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SPC 규탄 발언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SPC파리바게트지회장)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쿠광 규탄 발언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광물류센터지회장)
	강민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광본부장)
<최악의 판결> 선정 사유 발표	최정학 (중대재해전문가넷)
기자회견문 낭독	강규혁 (매일노동뉴스 대표)
퍼포먼스	최악의 살인기업 인증서 전달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026 최악의 살인기업>은 HJ중공업이다.

한 해 동안 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이 비용과 이윤보다 뒤로 밀려나는 우리 사회 산업재해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구조는 위험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에서 죽은 8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다. 2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정기업에서 죽은 12명의 노동자 역시 모두 하청 노동자다. 최악의 살인기업 상위 4개사에서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숨진 25명의 노동자 가운데 23명이 하청노동자다. 산재 사망사고의 주범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이미 오래지만, 위험은 여전히 외주화되고 안전의 책임은 계속 전가되고 있다.

HJ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대기업은 노동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하청노동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위험업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노동, 해고를 걱정하며 밤을 새워 일해야 하는 노동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는 살인기업을 제재해야 할 공공의 영역은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HJ중공업에서 숨진 8명의 노동자는 모두 공공영역의 건설현장에서 죽었다.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의 발주처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다. HJ중공업의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발주처는 부산광역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노동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죽었고, 포스코이앤씨의 노동자들은 신안산선 전철 공사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현장에서 죽었다.

공공영역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의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한 2025년, 산업재해는 오히려 이 전보다 증가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임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쿠광과 SPC다.

쿠광은 초심야 노동과 과로 노동을 강요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은커녕 “시간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리 없다”는 망언을 내뱉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악’이라는 말조차 부족한 살인기업이다.

그러나 애초에 쿠광이 무난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SPC가 시민

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잇을 만하면 반복되는 SPC 산재사고의 바탕에는 노동자의 생명이 멈춰도 빵공장의 기계는 멈추지 않는 악독한 노동환경이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다시 생산을 이어가게 하는 비인간성, 반복되는 사고와 사망 앞에서도 노동환경 개선은커녕 이를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몰염치함은 전국민적 SPC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SPC는 그 이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최근의 산재사고로 다시 입증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데에는 사법부의 책임 또한 크다. 많은 노동자-시민의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시행한 지4년이 넘었지만, 법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 3.1% 보다 3배 이상 높다. 집행유예율 역시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이 경영진과 경영 책임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데, 정작 법원이 나서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번 선정식에서 최악의 판결상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대표적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법원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하고 형해화시킨 셈이다. 법과 제도는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규정하는 최소한이다. 이 최소한마저 무너뜨린 재판부의 판결을 우리는 ‘최악의 판결’로 선정한다.

올해로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뽑아 온 지 21년이 지났다. 매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 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 그 위험을 외면하는 공적영역, 그리고 그 모순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사법이 이 죽음을 반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 나아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잊지 않기 위해 싸워 온 노동자들, 그 손을 놓지 않았던 시민들,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법과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 살인기업 선정식의 참가자들은 그 나아짐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일터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사회를, 이윤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원청책임 강화하라!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하자!
-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기업을 엄중히 처벌하라!
- 밤에는 잠 좀 자자! 초심야노동 중단하라!

2026년 4월 21일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참가자 일동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

**2026 살인기업 상위 4개 기업 모두 건설사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60%는 50인(억)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중 12%는 이주노동자**

가.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	사망(명)	하청(명)	외국인(명)
1위	(주)에이치제이중공업	8	8	-
공동 2위	현대엔지니어링(주)	6	6	-
	(주)삼정기업	6	6	2
4위	(주)포스코이앤씨	5	3	-

2025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 ▶ 상위 4개 기업에서 1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한 노동자 25명 중 23명이 하청 노동자임.

나. 2026 최악의 살인기업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 ▶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주)에이치제이중공업(구 한진중공업)임.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5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에이치제이중공업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건, 8명 사망).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비고
25-11-06	7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타워가 붕괴하여 매몰됨	울산시 남구	무너짐	▶ 7명 하청
25-12-17	1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철골 위에서 자재 운반 중 개구부 10m 아래로 떨어짐	부산시 중구	떨어짐	▶ 1명 하청

▲ 2025년에 (주)에이치제이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발생 경위 및 형태

- ▶ 2025년 11월 6일, 울산시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노후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도중 붕괴. 해체작업을 하던 9명 중 7명이 매몰됨. 매몰된 7명은 동서발전이 시공을 맡긴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하청업체 (주)코리아카코 소속이었음. 사고 발생 8일 만인 11월 14일에 마지막 노동자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매몰된 7명 전원 사망.
- ▶ 2025년 12월 17일, 추가 사망 재해 발생. 부산시 중구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하청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 ▶ (주)에이치제이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음. 2026년 1월 17일, 신분당선 공사 현장(경기 수원시)에서 하청 노동자가 쓰러진 벽체에 깔려 사망.

- ▶ 2026년 1월 21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관련하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에이치제이중공업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

다.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원청	하청	내국인	외국인	50인(억)이상	50인(억)미만
사고(건)	314(55%)	259(45%)	506(88%)	67(12%)	229(40%)	344(60%)
사망자(명)	323(53%)	282(47%)	534(88%)	71(12%)	254(42%)	351(58%)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2025)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기반으로 캠페인단에서 정리

- ▶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73건이며, 노동자 605명이 사망.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가 47%(282명)를 차지.
- ▶ 사망한 노동자 605명 중 외국인 노동자가 12%(71명). 이 중에서 68%(48명)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 ▶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50인(억)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60%(344건)로, 사망한 노동자 중 58%(351명)가 해당.
- ▶ 2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의 69%(11건)는 50인(억)이상 사업장에서 발생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75%(36명)가 50인(억)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73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267건(사망 286명)으로, 47%를 차지. 제조업 150건(사망 158명), 기타업 156건(사망 161명).
-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73건 중 △떨어짐 43.3%(248건), △깔림 12.0%(69건), △물체에 맞음 11.5%(66건), △끼임 11.5%(66건) 등임. ‘떨어짐’ 유형의 72.2%(179건)가 건설업 종에서 일어남.

1) 단일 사고에서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3%(16건)이며,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8%(48명)이다.

라. 살인기업별 산재사망사고 정리

1) 최악의 살인기업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8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하청
25-11-06	7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타워가 붕괴하여 매몰됨	울산시 남구	무너짐	(주)코리아카코
25-12-17	1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철골 위에서 자재 운반 중 개구부 10m 아래로 떨어짐	부산시 중구	떨어짐	한미프랜트(주)

▲ 2025년에 (주)에이치제이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 경위 및 형태

2) 공동 2위 - 현대엔지니어링(주) 6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외국인 2명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하청
25-02-25	4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 공사 중 DR거더가 붕괴되면서 무너짐	경기 안성시	무너짐	장현산업
25-03-10	1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 자재 해체 중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갱폼에서 떨어짐	경기 평택시	떨어짐	보림토건(주)
25-03-25	1	천안아산역 더퍼스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의해 달비계에서 떨어지며 외벽에 부딪힘	충남 아산시	부딪힘	(주)백광도시개발

▲ 2025년에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 경위 및 형태

- ▶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사망한 노동자는 전원 하청 노동자였으며, 이들 중 2명은 외국인 노동자(중국 2명)이었음.
- ▶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8건(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 11명이 사망. 사망한 노동자는 전원 하청 노동자임.
- ▶ 현대엔지니어링(주)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는 최근 3년간 13건으로 롯데건설(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2026년 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기도 함.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조사 이후 뒤늦게 하도급업체에 대금 원금 및 이자 103억8천만원을 지급함.
- ▶ 현대엔지니어링(주)은 2018년에도 5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여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오랫동안 하청 구조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3) 공동 2위 - (주)삼정기업 6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하청
25-02-14	6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	부산시 기장군	화재	(주)라이프하우징

▲ 2025년에 (주)삼정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 경위 및 형태

- ▶ 2025년 2월 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부산시 기장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침. 설계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소방 시설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짐.
- ▶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
- ▶ 2025년 4월 29일, (주)삼정기업 경영책임자인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삼정이앤씨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5개월여 만인 9월 10일에 박정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됨.

4) 4위 - (주)포스코이앤씨 5명 사망(건설업) : 하청 3명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하청
25-01-16	1	아파트 공사 현장 17층(48m)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 중 떨어짐	경남 김해시	떨어짐	(주)일창건설
25-04-11	1	신안산선 복선전철공사 지하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져 작업 중 매몰	경기 광명시	무너짐	-
25-04-21	1	아파트 공사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 중 29층(14m) 높이에서 개구부로 떨어짐	대구시 중구	떨어짐	(주)에스티엠
25-07-28	1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경사면 보강을 위해 천공설비로 구멍을 뚫던 중 드릴부에 안전대 줄이 말려 끼임	경남 의령군	끼임	-
25-12-18	1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붐 이음부가 천장 라이닝 철근에 걸려 있다 빠지면서 철근이 무너져 매몰	서울시 영등포구	무너짐	한신중기

▲ 2025년에 (주)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 경위 및 형태

- ▶ (주)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가 3명이었음.
- ▶ (주)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9건(2023 1건, 2024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9명의 노동자가 사망.
- ▶ 노동부에서 2026년 1월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주)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되었음. 시공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 중에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24건 있었음.
- ▶ (주)포스코이앤씨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자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정부에 보고할 때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짐.

- ▶ (주)포스코이앤씨는 2019년에도 10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여 <2019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이외에도 (주)포스코이앤씨는 살인기업 명단에 자주 이름을 올린 기업임.(2011년 4위, 2013년 3위, 2014년 5위, 2016년 2위, 2017년 4위, 2019년 1위)
- ▶ (주)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를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기업을 제재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2026 최악의 판결 선정이유

의정부 지방법원 2026. 2. 10, 2023고단834 (삼표산업 사건)

최정학 (중대재해전문가넷)

2026년 중대재해에 관련한 최악의 판결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2026. 2. 10, 2023고단834 판결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판결은 중대재해법의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교묘하게 왜곡, 한정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22.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총수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기소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①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② “대표이사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그의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제정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법의 입법취지는 경영책임자를 법률상의 대표이사를 넘어 이른바 ‘회장님’ 과 같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룹의 총수를 포함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현장의 말단 관리자나 기껏해야 중간 관리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정·가동할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지우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경영책임자란 그 지위나 직함에 관계없이 이 법이 부과한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사실상의 경영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위 ②와 같은 까다로운 추가요건의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념의 제한이다. 오히려 법원이 해야 할 일은 기소된 피고인(그룹 총수)이 위와 같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이었던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회장님’ 인 피고인이 그룹 산하 여러 기업의 각 부문별 대표자들로부터 정례보고를 포함한 직접 보고를 받고 (‘안전’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판결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결과의 직접 원인이 된 ‘일부 석분토 이적 후 석분토 야적장

아래에서 하부 채석을 하도록 한 것' 도 피고인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한다. 이보다 더 피고인의 의사결정권, 즉 경영책임자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판결은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적 비약이다.

둘째, 판결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과 안전관리 담당이사(CSO)에게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가 2021. 11월 경부터 양주 사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 또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1. 28일 에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는 문제가 된 ‘석분토 야적장 아래에서의 하부 채석’ 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석분토 이적 및 채석작업이 진행되는지” 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 대표이사는 이전에 같은 회사의 골재개발 담당 이사였으며 그 전에는 바로 이 양주 사업소의 현장소장이었던데도 말이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또 안전관리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단지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우선 그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비슷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직책인 안전관리 담당이사로서의 주의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이 사건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주의의무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무죄판단을 내리고 있다. ‘무죄’ 라는 결론이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가는 대목이다.